

## 요약

2025년 1월 유럽연합(EU)은 보험정리제도지침(IRRD)을 발효하였으며, 이후 EIOPA는 이를 구체화한 세부 시행규정을 담은 초안을 작성하여 공개함. Insurance Europe은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보험회사의 특성에 비례한 규정 적용, 세부 규정 간 또는 기존 감독체계와의 중복규제 해소, 회원국 감독당국 간 협력을 통한 일관성 있는 감독체계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함

- 2025년 1월 유럽연합(EU)은 보험정리제도지침(Insurance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이하 'IRRD')을 발효하였으며 EIOPA는 이를 구체화하여 세부 시행규정을 담은 초안을 작성하고 공개협의를 개시함
  - IRRD는 EU 내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 및 관련 기관의 위기 대처 규정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임<sup>1)</sup>
    - 2014년 은행권에서 도입된 '은행 회생 및 정리에 관한 지침(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이하 'BRRD')을 보험산업으로 확장한 것임
  - 각 회원국 감독당국은 2027년 1월 29일까지 IRRD에 명시된 규정을 자국의 법률·제도 체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함
  - EIOPA는 지침이 발효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기능 식별 기준, 정리 계획 및 선제적 회생과 관련된 규제기술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6개 초안을 작성하고 공개협의를 개시함
- 2025년 8월 유럽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Insurance Europe이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비례성, 중복규제 해소, 일관성 등을 핵심으로 언급함<sup>2)</sup>
  - Insurance Europe은 IRRD의 기본 취지인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제고에는 동의하지만 EIOPA가 제시한 세부 규정이 BRRD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 특히 보험회사는 장기부채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기 유동성 위험을 중심으로 설계된 BRRD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이에 보험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비례성, 중복규제 해소, 일관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언급함
- Insurance Europe은 IRRD 세부 규정이 보험회사의 규모와 위험 수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비례적 적용을 강조함

1) 김혜란(2024. 2. 26.), 「EU,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정 및 정리제도 도입」,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 보험연구원

2) Insurance Europe(2025. 8. 13.), "Insurance Europe response to EIOPA IRRD consultation"

- 선제적 회생과 정리 계획의 세부 항목, 감독 보고 수준 등이 보험회사의 규모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대형 보험회사와 중소형 보험회사 간 비례적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함
  - 중소형 보험회사에게 보다 단순화된 보고요건과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또한 초안에서는 시장점유율을 선제적 회생 계획 수립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시장 구조나 상품 특성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각 보험회사에 맞게 차등화된 규제 적용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시장점유율 외에 자산 규모, 부채 구성의 복잡성 등 위험 기반 지표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함

○ 또한 IRRD 초안에는 세부 규정 간 또는 기존 감독체계와 중복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보험회사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우려함

- IRRD 세부 규정의 회생 계획, 정리 계획 간 요구하는 요건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각 규정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초안이 기존 Solvency II 감독체계하에서 내부 위험관리 및 위기대응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절차와 유사하므로 기존 체계와 연계되도록 조정이 필요함
  - IRRD를 위한 별도의 보고 일정 및 서식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일정과 맞추고 사용하고 있는 보고서 및 내부 회생 시나리오 등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방지해야 함
- 이러한 중복된 보고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통합 보고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며, 각 회원국 감독당국은 동일한 전자 서식 활용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방지하고 감독당국 간 공유 및 비교가 편리해질 수 있음

○ 각 회원국 감독당국의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자침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 간 협력을 통해 일관적인 감독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함

- IRRD는 각 회원국 감독당국의 재량에 따라 동일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다국적 보험회사는 회생 및 정리 계획의 승인 절차, 평가 방식 등이 국가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 간 조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리 및 회생 가능성 평가에 있어 감독당국의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 절차 등을 제도화하여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 EIOPA와 회원국 간의 협력기구인 정리위원회 내에서 정보공유 절차, 의사결정 권한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회원국 간 차이를 방지해야 함
- 나아가 감독당국 간 협력이 단순한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과 판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EIOPA가 중심이 된 실질적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